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근거 신설〉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3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근거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0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 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

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근거 신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문서인 산업재해조사표¹⁾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② (생략)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자 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정보, 재해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는 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유사재해 방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발생한 재해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해발생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이나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은 산업재해조사표를 공단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평균 6만 건을 상회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가 검토하여 이를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구현하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①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에 대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관련한 사항이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을 위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③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도 연평균 6만 건을 상회하는 산업재해조사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이를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접수·처리를 공단에 위탁 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감독·조사, 산업재해 은폐 인지·조사 등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산업재해조사표 접수·처리 업무는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 아니라 점검·감독 및 수사의 기본이 되는 업무이고, 고용노동부는 점검·감독 및 수사 등을, 공단은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는 現 기간 관 역할 분담 체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